

2023학년도 통학차량 임차용역 규격서

○ 운행계획

- 운행차량 : 21인승 이상 총 1대, 학교직원(통학차량 보조원)배치.
- 1호차 방학 미운행
 - ※ 운행 노선 및 운행에 관한 세부내역은 운행노선 및 시간표 참조
- 운행기간 : 2023년 3월 1일 ~ 2024년 2월 29일(방학기간 제외)
- 운행일수 : 총191일(학기중 191일)
 - ※ 학기중 관내 현장체험학습[15회] 운행 포함
 - (현장체험학습은 본 입찰에 포함되어 설계된 금액으로 별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)**

○ 차량 기준 조건

- 승합버스로 [21인승 이상 1대 : 2016년식 이후 출고차량]으로 하여 등록을 완료한 차량(자동차등록증 표시)으로 동·하절기를 대비 냉·난방설비를 갖추고 차량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
 - 관할경찰서장에게 **어린이통학버스신고차량(의무사항)**
(도로교통법 제52조(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)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. ▶ 차체색깔은 노란색, 경광등, 어린이 발판, 어린이 안전띠, 광각실외후사경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수시 점검하여 보완하여야 함.
- ▶ 세부사항은 [붙임]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기준[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]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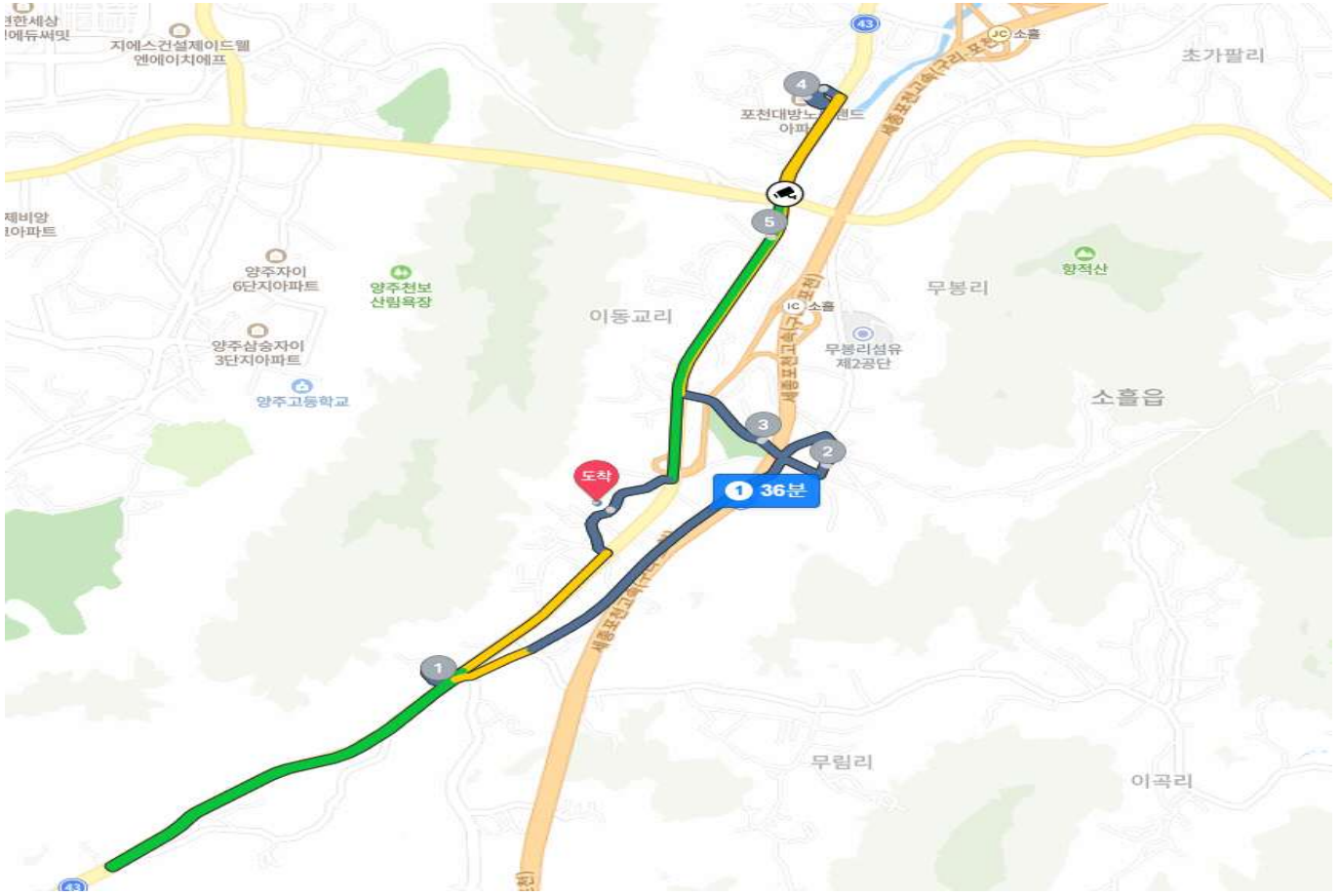
< 등교 노선 >

운행노선	출발시간	도착시간	경유노선 (탑승장소)	운행거리	탑승시간	탑승 학생수(명)	운행 횟수
1회(등교A)	07:40	08:20	① 축석마을회관	1.5km	07:50	2명	1회
			② 기웅스텐 (무봉리)	7.3km	08:00	3명	
			③ 씩크대 (무봉리)	0.5km	08:01	1명	
			④ 대방아파트	3.6km	08:10	8명	
			⑤ 부대앞	1.6km	08:15	1명	
			학교	2.5km	08:20		
			A코스 운행거리	17km		총 15명	
2회(등교B)	08:20	09:05	① 푸르미아르미소	4.6km	08:42	6명	1회
			② 무봉리순대국	1.3km	08:48	1명	
			③ 대방아파트	0.6km	08:53	3명	
			④ 부대앞	1.6km	08:58	2명	
			⑤아동복(학교초입)	1.2km	09:02	1명	
			학교	0.5km	09:05		
			B코스 운행거리	9.8km		총 13명	
			총 운행거리	26.8km		총 28명	

< 하교 노선 >

운행노선	출발시간	도착시간	경유노선 (탑승장소)	운행거리	하차시간	탑승 학생수(명)	운행 횟수
1회(하교A)	14:40	15:00	① 축석마을회관	1.5km	14:46	개학 후 방과후일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코스 변경 될 수 있음	1회
			② 대방아파트	8.5km	14:55		
			③ 학교	3.5km	15:00		
			운행거리	13.5km			
2회(하교B)	15:10	15:30	① 대방아파트	3.6km	15:20		1회
			② 학교	3.4km	15:30		
			운행거리	7km			
3회(하교C)	15:40	16:20	① 아동복(학교초입)	0.5km	15:42		1회
			② 대방아파트	4.2km	15:50		
			③ 학교	3.5km	16:20		
			운행거리	8.2km			
4회(하교D)	16:25	17:00	① 기웅스텐(무봉리)	1.9km	16:30		1회
			② 푸르미아르미소	4.5km	16:47		
			③ 무봉리 순대국	1.8km	16:50		
			④ 대방아파트	0.6km	16:54		
			⑤ 부대앞	1.6km	16:58		
			⑥ 학교	2.5km	17:00		
			운행거리	12.9km			
			총 운행거리	41.6km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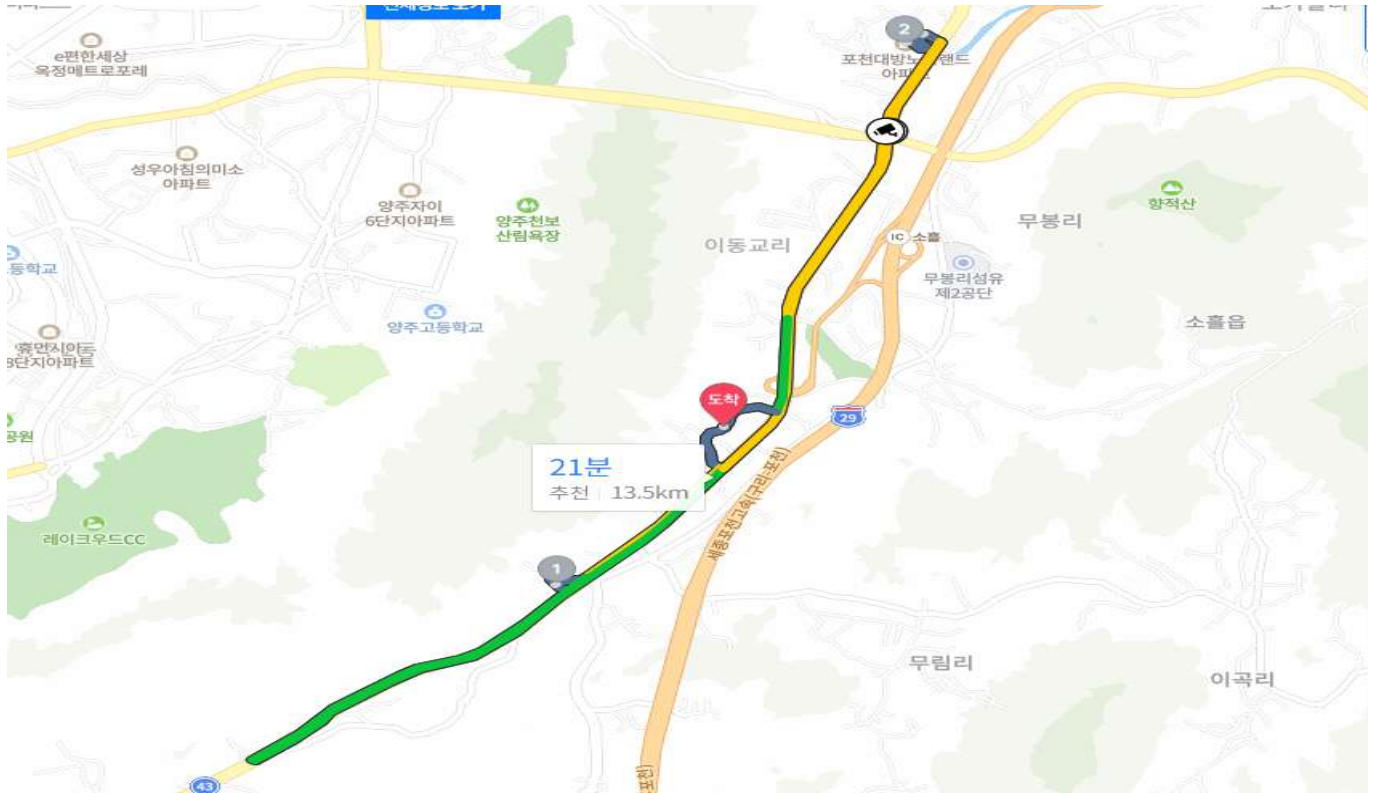
<등교A코스>



<등교B코스>



<하교A코스>



<하교B코스>



<하교C코스>



<하교D코스>




[붙임]


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[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]


(관계법령 : 「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,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)

항 목	황색 도색	관계법조문	안전기준 제 19조 8항
안전기준	○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.		
확인내용	① 차량 전체가 황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확인		


항목	스티커 등 보호표지	관계법조문	안전기준 제 19조 9항
안전기준	○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어린이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- 앞면 : 창유리 우측 상단(40×15cm) - 뒷면 : 창유리 중앙 하단(50×20cm) - 붙이거나 뗄 수 있어야 함 - 재질 : 두께 1mm이상의 아크릴		
확인내용	① 앞·뒤에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여부		


항목	아동용 카시트	관계법조문	도로교통법 제50조
안전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아(6세미만)인 경우,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. 		
확인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차량에 유아용보호장구(카시트, 부스터, 휴대용 카시트 등 포함) 비치 여부 ※ 유치원에서 조끼형벨트 의무장착 		

항목	승강구	관계법조문	안전기준 제29조 1항
안전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 작동 시 어린이 등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○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, 발판 윗면은 승강구 유효너비의 80%이상,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		
확인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승하차용 보조발판 설치여부 		


항목	광각실외후사경	관계법조문	안전기준 제50조2항
안전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차체 바로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○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,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 		
확인내용	<p>① 차체 앞과 출입문을 확인할 수 있는 광각실외 후사경 설치 여부</p>		

항목	후진알림장치	관계법조문	-
안전기준	-		
확인내용	<p>① 변속기어를 후진 또는 R에 위치하면 외부에서 경고음이 들리는 부저(알림) 설치 여부</p>	-	

항목	후방경보장치	관계법조문	-
안전기준	-		
확인내용	<p>① 후진시 후방에 사물이 일정 거리 이내로 가까워지면 운전자에게 경고음이 들리도록 하는 장치 설치 여부 (차량 범퍼에 단추 모양 센서 확인)</p>		

항목	후방카메라	관계법조문	-
안전기준	-		
확인내용	① 후방카메라 설치여부 (자동차 후면 등록번호판 근처의 카메라 확인) ※ 자동차 후진시 운전석에서 후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보임		

항목	블랙박스	관계법조문	-
안전기준	-		
확인내용	① 영상기록장치(블랙박스) 설치 여부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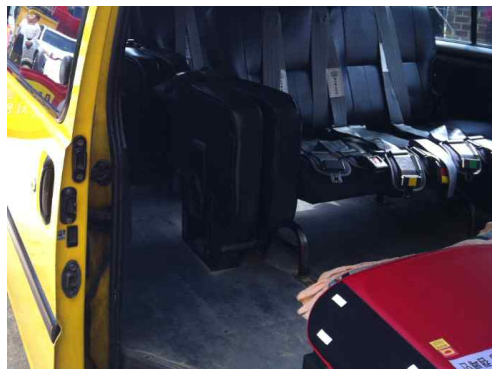
항목	승하차보호기	관계법조문	-
안전기준	-		
확인내용	① 자동차 오른쪽 뒤쪽에 승하차 보호기(일명 : 천사의 날개) 설치 여부		

항목	창유리 썬팅(앞유리)	관계법조문	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
안전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1. 앞면 창유리 : 70% 미만 2.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: 40% 미만 		
확인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앞면 창유리에 썬팅 부착여부 		


항목	창유리 썬팅(옆면)	관계법조문	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
안전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1. 앞면 창유리 : 70% 미만 2.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: 40% 미만 		
확인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좌우 옆면에 아주진한 썬팅 부착여부 (판단기준 : 옆면 썬팅이 있으나 연하여 외부에서 자동차 내부를 식별할 수 있으면 제외) 		

항목	어린이보호차량표시등	관계법조문	안전기준 제48조
안전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색표시등 바깥쪽, 황색표시등 안쪽 2개씩 설치 ○ 도로 정지시 황색표시등 점멸(운전자 조작) ○ 승강구가 열릴 때 자동으로 적색등 점멸 ○ 출발 시 승강구 닫힐 때 자동으로 황색등 점멸 		
확인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앞 뒤에 어린이보호차량 표시등 설치 여부 		



항목	접이식 좌석	관계법조문	안전기준 제25조의2
안전기준	○ 접이식 좌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		
확인내용	<p>① 통로에 접이식 좌석이 있음 (단, 외부에서 조작(접고 펴는)을 할 수 있는 접이식 좌석은 제외</p>		

항목	안전확인장치	관계법조문	-
안전기준	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(국토부령)」 개정안 제53조의4(하차확인장치)-		
확인내용	<p>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제거한(이하 ‘운행종료’)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(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)을 누르지 않는 경우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고음과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이 작동하는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2.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 데시벨(A) 이상일 것 		

항목	자동문 개폐장치	관계법조문	-
안전기준	-		
확인내용	<p>① 운전석에서 뒷문을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장치 설치 여부</p> <p>* 15인승 이하 차량은 출고 후에 장착(단, 2005년 7월 이후 제작된 기아자동차 그랜드카니발은 제작사에서 부착하여 출고)</p> <p>**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모두 자동문이 설치됨</p>	 <p>(제작사에서 출고된 경우임)</p>	

항목	안전확인장치	관계법조문	교통안전법 제55조
안전기준	「교통안전법」 제9조, 제55호(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)		
확인내용	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(DTG)가 장착여부		